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12. 12.(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67차 및 제6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68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고안건 및 의결안건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사유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자의 재승인 조건 2017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7년 3월 보도PP 2개사를 재승인하고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 3월과 11월 종편PP 4사를 재승인하고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접수하고,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자문반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과 11월 종편PP 4사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회계·법률 자문가에 대한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이행 실적 4사 공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이행 여부(4사 공통)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 기구 구성·운영 이행 여부,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 해당사항입니다. 진행자 및 출연자 법

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주)매일방송),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장르 프로그램 합산비율 이행여부(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4사 공통),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 이행 실적(주)매일방송), 사업계획서상의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주)매일방송)입니다. 다음으로 종합편성PP 이행실적 점검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종편PP 4사가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조건의 경우 2017년도 재승인 이후 방송분에 대해 2017년도에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의 경우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진행자 및 출연자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 조건의 경우 2017년도 재승인 이후 방송분에 대해 2017년도에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매일방송에게 부가된 재방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하여 매일방송은 2017년 12월 방송분에 대해 재방비율을 47.5%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위원회의 실사 결과 46.45%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3개 종편PP에 부가된 보도 관련 4개 장르에 관한 편성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해서 3개 방송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보도 관련 4개 장르 편성비율 계획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 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방송사와 방통위 실무진 간 보도 관련 4개 장르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프로그램 시사를 통해 장르를 판정하였고,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은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당초 방송사가 보도 관련 장르가 아니라고 제출한 TV조선의 '강적들'과 채널A의 '외부자들'은 '시사논평' 장르로서 보도 관련 4개 장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종편 4사 모두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상의 금액 이상을 준수했다고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방통위 실사 결과,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은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 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널에이와 (주)매일방송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한 결과 계획한 금액만큼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통위의 종편PP별 투자금액 산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제작비의 경우 직접비만 콘텐츠 제작비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좀 더 구체화,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행실적점검 자문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운영은 계획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매일방송에서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2018년 1월 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방송에서는 감사위원장으로 (주)매일방송의 협직 전무이사를 임명하여 경영의 독립성이라는 조건을 위배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2인을 임명했으나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째, 사업계획서상 외주제작사

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서를 통해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비 현실화, 저작권 및 해외판매에 대한 권리 보장 등 8개 항으로 이루어진 '외주사와의 상생계획'을 준수하겠다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의 1개월 동안 (주)매일방송이 신규 또는 재계약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4개를 대상으로 외주상생계획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정부표준계약서 사용과 제작비 현실화 등 2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종편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입니다.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였으나 (주)매일방송은 사회적 소수대상 방송프로그램 확대,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방안 마련, 최초 승인 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방안 이행,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보도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입니다. 보도PP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권고사항이 부과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권고 사항을 이행하였지만 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 연합뉴스가 연합뉴스티브이의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안)입니다. (주)채널에이는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주)매일방송은 콘텐츠 투자계획과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중 '17년에 이행하지 않은 '외주사와 상생방안 준수' 및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중 '감사위원회 구성' 조건의 경우에는 2018년에 이행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권고사항 점검결과는 20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주)매일방송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를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하고 2019년 1월 중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작성하고 나서 혹시 사정변경이 있는 사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의 경우에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관련해서 본인들이 다음번 주총에서 방송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공문 내용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선임하겠다고 인적사항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받았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알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주총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인적사항까지 우리에게 제출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참작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7년도의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계획만 가지고 이행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MBN에서 좀 더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을 앞당겨서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로 투자하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MBN과 채널A의 경우 액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자료화면이거나 저작권에 관한 부분인데, 지상파나 또는 스포츠 중계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협찬을 하다 보니까 지불해야 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과거 몇 년 전에 사용대가를 작년에 한꺼번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 판단은 그것은 어쨌든 2017년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상파와의 프로그램사용료 대가,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권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작권에 관한 문제인데, 어쨌든 돈이 그만큼 프로그램 제작비에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것이 언제 인정을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송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우리가 꼭 기계적으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정명령을 내려야겠다는 것보다는 방송현장의 어려움을 좀 더 경청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어쨌든 시정명령이 나가면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 국장님 여지가 없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이것이 회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저희가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사무처에서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저희가 회계전문가 4명과

법률전문가 2명 포함해서 총 6명으로 전문가 자문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문반 6인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떠나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취지라는 것이 해당 연도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부과한 것을 감안할 때 예전에 2011년이나 2017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금액은 설사 2017년 한 해에 이것이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승인 조건에 포함해서 전액을 다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저희가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 안건에는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채널A 같은 경우 약 29억원이라는 돈이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주장에 따르면 외주사에서도 그 자료화면을 지상파로부터 많이 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외주사가 지불하지 않고 채널A에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제작비에 쓰인 돈은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 인정을 받느냐는 것입니까? 과거에 썼기 때문에 과거의 회계로 처리해야 하고 털어야 되는데 돈이 '17년도에 지불됐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소급해서 회계 처리하기는 곤란한, 이미 재승인 심사가 다 끝났고,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였던 돈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제작비로 투자했다는 것은 인정을 영원히 못 받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일단 회계처리는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승인 관련해서는 회계처리 여부를 떠나서 해당 연도에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이 관점을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17년도에 실제로 지출이 제작에 투자되지 않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혹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채널A에서 투자한 실적이 과거에 인정을 받아서 과거에 채널A가 콘텐츠 투자 미이행으로 인해 받았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분이 소급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종편들의 경우에 과거부터 항상 콘텐츠 투자실적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적이 과거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기준에 나갔던 시정명령이나 저희가 부과했던 과징금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과거에 반영된다고 해서 채널A가 받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2017년 실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또 저희 재승인 조건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의 의견에 따르면 자체제작비의 경우에 직접비만 콘텐츠 제작비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점검을 할 때 방송사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간접 제작비다, 직접제작비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있어서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빨리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 보완하실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지침을 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업자들 심사를 할 때, 이행점검 나갈 때 미리 예고했던 그 기준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마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예측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매번 하는 것이지만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은 일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재승인·재허가 조건의 이행이라는 것은 이미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0%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비 투자 문제, 재방비율 문제나 프로그램 편성 비율 문제는 원칙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100%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 2%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양해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석진 위원님 지적한 제작비 투자금액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의 의견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쪽에서 제출한 의견도 다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그리고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조건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에 종편사에 대해 재승인해 준 이후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 방송 품질 자체는 상당히 높여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재방비율 준수나 보도 관련 장르 편성 비율 이행,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계획 또한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종편사들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히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의무위반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편들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투자도 많이 하니까 시청률이 높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종편 사업권을 승인해 줬던 취지입니다. 이 부분들, 즉 종편사들이 노력해서 실적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작비 투자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 이분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직접비만 콘텐츠제작비로 인정되는 부분들의 문제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잘 점검해서 우리가 일부러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최대한 성의를 갖고 투자도 한다면 그 부분들은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과정에서는 이런 기준에 모호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전반적으로 종편PP의 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행실적이 양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쟁점은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련해서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절성 여부인 것 같습니다. 먼저 MBN의 2017년도 음악 저작권 및 스포츠중계권료 1년분 ○○원을 전액 제작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점검대상기간인 '17년도 12월 한 달만을 균분해서 한 달 제작비만 인정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인 발생주의 회계, 그리고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을 고려할 때 12월 한 달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널A의 경우에 2011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지상파 자료화면 저작권료의 일시 지급액 ○○원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17년분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채널A 측은 이 금액이 외주제작사의 지상파 자료화면 무단사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사용내역과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운 우발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제 비용 지급시기인 2017년에 전액을 콘텐츠 투자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제작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처는 2017년 해당분인 ○○원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발 채무에 관한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고려할 때 채널A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콘텐츠 투자를 재승인 조건의 하나로 부과한 취지는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행실적의 관리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미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점들과 재승인 조건 부과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7년도 해당 분만 인정한 사무처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채널A가 저작권료로 지급한 ○○원 가운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원에 대해서 과거의 재무

제표를 수정해서 안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2017년도 재무제표에 그대로 둘 것인지의 결정은 전적으로 채널A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어떤 경우라도 방통위로서는 재승인 조건의 부과 취지와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감안할 때 2017년도 해당 분인 ○○원만 인정한 의결주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콘텐츠 제작비 부분 인정에 따라서 채널A는 당초 투자계획보다 19억 6,300만원, 즉 2.3%가 모자라고 매일방송은 2억 1,100만원, 즉 3.5%가 부족 해서 재승인 조건의 미이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원칙을 고수해야만 하는 사무처 입장 역시 이해가 됩니다. 이번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다른 안건보다 엄격한 심의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지키려는 종편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방통위로서도 심결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자들이 아쉽긴 하겠지만 원칙을 지키려는 방통위 입장을 이해하고 내년에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김석진 위원님, 그리고 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사무처가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조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작인력의 인건비나 제작에 투입되는 방송 제작비의 감가상각비가 콘텐츠 투자비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나 외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외부 임대가 아닌 자체스튜디오 이용 시 시설관리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속히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 다 잘 말씀하셨어서 저도 방송사 경영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널A의 경우 정책당국에 호소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권에 대한 돈을 일괄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해마다 쓴 저작권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개수가 다릅니다. 2011년 다르고 2012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다 겸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7년 분 N분의 1을 해서 회계처리상 그것만 인정한 것으로 되었는데, 회계원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워낙 명쾌하게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연합뉴스TV의 문제입니다.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사장이 겸임 사장입니다. 이것이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방송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 광고를 다루는 업무가 신문 쪽인 연합뉴스 쪽에 있다는 것은 독립성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권고사항이 확실히 지켜지는지는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YTN과 연합뉴스TV 같은 보도전문방송이 광고를 직접 영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광고제도를 개편하는데 그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행실적 점검 하느라 사무처 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점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방송사들을 괴롭히

거나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방송사로 발전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이것 가지고 지나친 규제를 하거나 불만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종편과 보도 전문채널들이 이행실적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 장르 구분을 명확히 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장르를 구분해서 하는데 이런 쪽에도 할 수 있고 저쪽에도 할 수 있게 해서 뭔가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비 계산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더 점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이 있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 또는 외주제작사에 종사하는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 진다면 방송사가 몇 년은 견딜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견디기 어렵고 우리 방송이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생을 통해 그들에게도 외주제작사, 그리고 외주제작사에 종사하는 또는 외주제작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안전하고 여유 있는 환경에서 제작할 수 있을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의 점검을 좀 더꼼꼼하게 해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또 외주제작사의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 간 상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종편들, 나아가 우리 방송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가령 정부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제작비를 현실화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는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해서 이런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 기준입니다. 먼저 국내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주요 해외사업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 입법례와 동일하게 매출액과 이용자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조사 시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해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서 방통위가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를 개시한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방안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의 취지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자 고충처리 등 의무를 해외사업자가 성실하게 이행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횟수와는 무관하게 과태료 금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내년 1월까지 관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방통위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2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조사 시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 이것이 망법 제64조제1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맞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비록 개인정보에 한정하고 있지만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지사나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4가지 정도면 국내 진출 해외사업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에 발효된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에는 EU 기준에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 소위 레프리젠테이브(representative)를 지정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에서 도입한 제도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EU와의 GDPR 적정성 평가 때 상당한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원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시행령안, 이 정도면 다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 보고 시에도 지적했지만 이 정도 시행령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즉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이 법안이 법사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고려해서 기준을 정했고,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그들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의 유·노출이나 오남용 등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과장이 설명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나 매출액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방통위로부터 조사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리인을 통해 자료제출 조사, 협조를 받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4호를 추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반영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규제공백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률자문관님, 혹시 사전에 검토를 하셨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10월부터 법무법인들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법률자문관님은 어제 늦게 해서 깊이 검토를 못 했을 텐데 법에서 정한 위임법 한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시 사업자들, 법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곽영환 법률자문관

- 일단 어제 검토가 깊지는 못했는데 저희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내대리인 제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한·미 FTA 통상법 위반 관련해서 논쟁이 있지만 지금 정통망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절차적 성격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더 중론이었고, 저희가 시행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된 제도는 당연히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업체 또한 해외에서 유사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과 시행령만 해석해 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인도 기업이 유럽에서 1조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 그 인도 기업에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시행령에도 우리 위원회가 국내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모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런 범위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보면 자동적으로 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매출액 1조원 이상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방통위에 의해 인정된 자' 이렇게 내용을 차후에 수정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데 국내 대리인 지정 기간이나 형식, 절차 등 이런 규정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구체적 절차를 나중에 차후에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시행령에도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우선 40여일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해관계자나 다시 법률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리인 지정의 형식과 절차 문제는 EU GDPR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지정한 바 없고 대리인 지정은 해당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특별하게 별도의 양식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서면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그리고 위반 시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은 기존 국내 사업자 간의 차별규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령이 꼼꼼하게 점검되어서 규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예. 이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선례가 없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받아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역차별이다 이런 불평들이 많았고, 또 우리가 매출규모나 가입자 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또 자료제출을 잘해 줄 경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매출액이 259조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이 조항만 가지고 과연 자료제출이나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보는데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그것이 더 고민입니다. 과태료도 보면 상한액이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횟수에 관계없이 2,000만원으로 부과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수백조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과태료를 내고 말지 자료제출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을 준비하는 사무처로서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력 확보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다만, 작년부터 방통위, 국회에서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방지 문제를 많이 이슈를 제기해 주셔서 금년에 역외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최초로 신설이 됐고, 또한 국내대리인 규정도 도입했습니다. 또 의원입법 형식으로 해서 해외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당한 자료제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임시 중지명령, 해당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형태로 해서 규제 집행력 강화 방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변재일 위원님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문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대리인은 역차별 방지에 한 걸음 나가준 것이고 금년,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저는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다시 의견 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정말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콘텐츠업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외국에서 돈은 벌되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기본방향이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한으로 받지 않거나 거의 받는 등 마는 등, 또 규제가 있어도 잘 협조를 하지 않는 매우 좋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저 뒤에 기자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글로벌 콘텐츠업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보도들도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워서 제대로 글로벌 콘텐츠업자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 개인 정보를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 대리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국내외 사업자 간 엄청난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동등한 규제로 가는데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틈이 없이 조항들을 잘 다듬어서 좋은 시행령안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사유입니다.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 중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이 단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주요경과입니다. 1964년에 방송법 제정을 통해 방송광고의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73년 방송광고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오일쇼크 이후 과소비 조장 이후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가 금지되었습니다. 2007년 방송위원회에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9년 간접·가상광고가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 연두업무계획과 국정과제, 4기 정책 과제 중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방송광고 균형발전 정책 추진방향을 방통위에 건의하였고, 2018년 11월 방통위는 균발위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3>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입니다. 안 제59조제2항제1호 라목 본문 개정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제작재원 확충을 통해 방송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중간광고 규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를 현행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2>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신설이고,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안 제59조제2항제2호다목에 단서를 신설하며,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은 안 제59조제2항제3호다목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중간광고 시작 시 고지자막 크기 등을 신설하여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한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비상업적 공익 광고 제작주체 확대입니다. 안 제59조제4항제1호 개정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비상업적 공익 광고 제작 활성화와 편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은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그다음에 방송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4> 향후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중간광고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제도를 부활시키기 전에 경영효율화 방안 등 방만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먼저 시행하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상파에 대해서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준비되어 있으면 간략히 지상파에서 제출한 자구노력계획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3사가 주요한 계획 등을 약속해 왔는데 경영혁신 방안으로 KBS의 경우에는 상위직급 직원의 축소, 조직 개편을 통한 보직자 수 축소, 특별 명예퇴직 실시, 유효 자산 매각, 긴급 비용 절감 추진 등에 대해 약속해 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MBC도,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MBC도 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동일한 계획을 제출했고, 특히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KBS나 MBC 모두, SBS는 가장 구체적으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계획 이런 것들도 제출했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각 방송사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그 계획도 제출했지요?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KBS부터 해서 KBS는 오늘 사장 취임식 때 대강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와 SBS도 각자 각사에서 최종 정리해서 주요 내용들은 이미 의견청취 과정과 그 이후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조만간 각사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의 광고수익이 줄어든 이유를 따져 보면 원인부터 따져서 근본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새 정부 들어서 방송이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성을 떠고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방송이 계속 되니까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가 붙지 않고 경영수익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답게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답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길만이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해서 현재 지상파가 겪고 있는 그런 경영위기를 벗어나는 첨경임을 저는 누누이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이 제출한 자구대책,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침까지 수정된 자구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공정방송 의지를 담은 내용이 저는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영쇄신책이라는 것도 구체성을 떠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방송사가 스스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구 대책이 이것이 공식 문서가 아니지요? 공문 형식으로 온 것이 아니지요?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공문으로 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인 것은 정리해서 각사가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공식 문서도 아니고 마지못해 계획서에 불과한 성격인데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만 그 진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까지 공정방송 의지, 경영쇄신책 이것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문서도 아니고 공문도 아니고 대국민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저 중간광고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자구대책이라는 문구만 제출하고 중간광고 허용받고 난 뒤에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은 정권에 코드를 맞춘 출연진 또 과거 특정 정당 후보 쪽에서 음으로 양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던 진영인사들에게 서로 경쟁적으로 수억 원의 고액출연료를 지불하면서 편향방송을 하고 있고 경영 악화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고도 한쪽 진영 시청자만 바라보는 그런 편향된 방송을 하면서도 공영방송인 지상파방송이 어려우니까 중간광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 수익이 악화된 것은 방만한 경영, 또 위기의식이 없어 보이는 집행부 수뇌부의 그런 절박하지 않은 인식, 편향되고 공정하지 못한 방송내용에 근본이유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자성이 없습니다. 자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홍보방송, 어용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그래서 편파방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현재의 방송사 수뇌부들은 이 수뇌부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비대칭규제를 푸는 차원이다, 만일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KBS가 임직원의 노트북 지원에 5년간 46억, 또 사내 무료 치과치료를 5년간 4억 4,000만원, 또 임직원 휴대 전화요금을 5년간 11억원 지급했고, 62명이 고용세습 추태를 누렸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과도한 방만경영입니다. 이를 광고주 돈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광고규제 완화 역시 과도한 것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또 MBC도 보면 창사 이래 최대 규모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몸집 줄이기로 경영 쇄신하겠다,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진영을 속아내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될까 봐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은 중간광고를 풀고 말고가 아니라 양쪽 진영 시청자, 다시 말하면 전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모두가 신뢰하도록 프로그램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 기대서 또 권력이나 정권에 잘 보여서 제도적인 규제를 풀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진정한 자구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구대책은 스스로 노력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편향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파방송사,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비대칭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회로 넘겨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오늘 보고된 입법예고에 저는 반대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우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제작주체로 인정받는 쪽이 누구입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종편미디어렙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종편미디어렙사도 공익광고를 만드는 제작주체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리고 오늘 시행령 예고안에는 과거의 단기과제로 제시됐던 것 가운데서 가상광고, 간접 광고는 유예된 것이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은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 되어서 정책효과나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행령 개정안으로 방통위가 공식 행정절차에 의한 의견수렴에 나서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중간광고 도입에 앞서서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 제고방안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지상파 방송사에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안을 요구했고, 방송사 임원 청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상파방송 3사가 수정 제시한 경영자구안들을 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계기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상파방송 경영진 역시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국회나 시청자 단체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적책무를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6일에 보고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의 단기과제 중 일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국회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방통위의 광고 정책이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광고나 협찬제도 개선 전반에 대한 설명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광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기대를 해소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전체 미디어 정책 가운데 작은 부분입니다. 종편PP의 출범으로 촉발됐던 방송광고시장의 재원 이동이 이제는 방송광고시장 내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른 매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사업자 재원구조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 중소방송의 생존을 보장하는 결합판매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고 판매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그러한 종합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원구조에 대한 재설계는 결국 유료방송 까지 포함한 방송시장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까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방송 사업자들도 방송광고시장 내의 광고재원 변동에 따른 집안싸움보다 인터넷과 온라인, 디지털 매체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정부 역시 미디어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법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또 권고사항을 내서 그 이행계획을 자료로 받지만 일반 방송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사업자들의 계획을 따로 받은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지상파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또 종편과의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광고가 논의되어 왔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대칭규제는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지상파사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요구하였고, 이것은 이름은 자구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요체는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약속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나 콘텐츠 투자계획 이런 것들을 통한 지상파 발전의 향후 경영개선계획, 이 2 가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3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러 차례 요구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충족됐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인력 감축 계획은 노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3사가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계획 그리고 콘텐츠 투자계획, 유 휴자산 매각계획, 그리고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계획 이런 것들 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방송의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KBS는 KBS 방송기준과 방영 및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왔고, MBC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약속해 왔고, SBS는 편성위원회가 방송 편성, 취재, 제작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련 회의정보를 공개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3사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하는 안에는 일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방통위에 제출된 3사의 자구노력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인 KBS의 태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의견 청취장에 나온 KBS 주요 간부는 방통위원장과 위원들의 질의와 요구를 메모 하나 하지 않고 듣고 있었던 이런 불성실하고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 요구에 대한 KBS 내부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 내용이 충분히 KBS 내부에 전달되지 않아서 보완 제출되었다고 하는 자구계획이 다시 미흡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수정·재보완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무기관에 대한 KBS의 이런 불성실함은 저는 궁극적으로 KBS 경영진의 문제라고 봅니다. 해당 간부는 KBS 내에서 이너 서클(inner circle)의 핵심이라고 이미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KBS 경영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저희가 보고·접수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서 부연설명 드린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건과 별개로 지상파방송사들이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한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방통위원회로 있는 동안은 공정한 방송 그리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늘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

었지만 지상파 3사가 이번에 지상파 중간광고 부활을 계기로 해서 제출했던 자구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 구체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체성이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 과거 제3기 때에 비하면 지상파방송 3사가 나름 성의껏 자구안을 마련해서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당연히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논란이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공정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불공정하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송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인 의미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국회에도 여야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또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에도 얼마든지 국회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처음 안건이 거론될 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작재원 확충, 이것은 일부 효과라고 봅니다. 지금 PCM, 변형된 중간광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법이나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에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간접 광고도 함께 검토했으면 했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대원칙을 앞으로 지향해 나간다면 중간광고뿐만 아니라 가상·간접광고 부분도 언젠가는 검토해야 합니다. 협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찬제도도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제도의 개편,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책의 기초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칸막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적인 책무를 좀 더 많이 부과해야 하고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반대로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결국 콘텐츠 가지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든 종편사업자든 아니면 일반PP 유료방송사업자든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방송정책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영방송은 더욱 공영방송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은 민영방송답게 자체적으로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제체계, 그 전에 규제정책의 방향이나 내용들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종편사들 그리고 일반 PP들까지 전체적으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2월이면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국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번 중간광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 방송사의 비대칭규제가 온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들의 방송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는 것,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간광고를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했고 방송사들이 그 조건에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중간광고로 들어오는 새로운 수입은 콘텐츠 제작에 전적으로 투여하고 방송사 직원들의 복지나 급여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경영합리화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 그리고 어떤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공정한 방송이 되겠다는 것도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조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광고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약속을 지상파방송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민들에게, 저희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아마 선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무선에서도 방송사들의 그런 약속이 지켜지도록 계속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간광고도 허용하지만 저희가 노파심에서 지상파방송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의 위기 또는 어려움이 중간광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지요.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한숨 돌리는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만족해서 방송사들이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나 연구를 게을리 하면 아마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광고를 하면서 크게 염려하는 것은 이것으로 방송사의 경영진이나 일반직원들이 우리의 큰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안심하고 자구노력을 또는 경영합리화 계획 이런 것들에 소홀해질까 봐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실무선에서 계속 방송사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이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광고가 넘쳐나던 영광의 시절도 있었고, 또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권력기구로서 모든 문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사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있으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외부에서 많이 지적해야 할 것 같고, 뒤에 언론인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언론사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가 위기에 닥쳐서 그동안 신문사가 생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구노력도 굉장히 했었고, 심지어 봉급도 많이 깎았습니다. 지상파방송사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야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광고의 허용으로 우리 방송사들이 안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 등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오전에 상정안건 6건을 모두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 개별 일정 및 원활한 회의 운영 등을 위해 <의결안건> 3건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7분 정회 】

【 14시 30분 속개 】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회의는 상정된 <의결안건> 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농협은행(주)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18-70-578)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농협은행(주)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농협은행(주)를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래 지정조건을 부과합니다입니다. 지정 조건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따라 민간아이핀사,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총 13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각각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방식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농협은행(주)의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현장실사 및 사업자 소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9월 17일 농협은행(주)이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신청함에 따라 10월 2일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 및 5일간의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후 보완사항 관련된 사업자 의견청취를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자 명칭입니다. 농협은행 주식회사(NH농협카드 분사)입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농협은행(주)는 14부문 1분사로 이루어져 있고, NH농협카드 분사는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14부문과는 달리 독립된 인사재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항목과 심사절차는 지정 심사계획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설비 적정성 등 총 92개 기준이고, ‘적합’, ‘부적합’, ‘보완’으로 평가하여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주요 심사절차는 기술·법제·회계 분야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해서 이행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였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붙임 1>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 92개 심사기준 중 적합 87개, 부적합 없음, 보완필요 사항 5개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기준 중 “중계운영사 운영시스템 장애 시 긴급대응 방안”, “간편 인증 직접 수행” 등 5개 항목에 대해 보완필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19년 3월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보완 필요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완료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협은행(주)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일부 미흡하지만 보완필요 사항에 대해 이미 개선하거나 3개월 내 개선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보완필요 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사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지정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필요 사항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의결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금일부터 3개월 후인 ‘19년 3월 12일까지 지정 조건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행 결과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가 확인되면 ‘19년 4월 중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은 ‘19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전체 신용카드사 16개 중 현재까지 7개, 그리고 8번째 신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신용카드사가 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치 않는 배경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실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은 자기 카드사의 회원들이 편리하게 카드를 활용해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 본인확인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전문계 카드사의 경우에는 모두 NH카드까지 지정을 받게 되면 전문계 카드사는 모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본인확인기관에 대해 여러 가지 물리적·관리적·기술적 조치 그리고 재정적 능력이나 그리고 실제 설비 적정성 부분을 상당히 세밀하게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나 아니면 인력 충원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신용카드사들이 회원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되기를 원할 텐데 왜 이렇게 절반밖에 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현대, 삼성 전문 카드회사는 다 신청했는데 BC카드나 이런 카드….

○ 김석진 상임위원

- 대형카드사들은 다 했다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은행계 카드사들은 필요성이 적습니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리고 대부분 본인인증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니 올 4월부터 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지만 50만 건 정도 되고, 나머지 95% 정도는 거의 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렇게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혹시 괜히 까다로운 조건이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되, 저희 법에 보면 본인확인기관에 한해서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보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인증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 물리적인·기술적인·관리적인 조치를 잘 구비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인건비가 들고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비용이 많이 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4페이지 심사항목이 저희 심사기준을 통과하려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는 75개 그다음에 재정적, 설비 적정성 사항은 92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점검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 투자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술 인력도 의무적으로 8명 이상 보유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추가로 신청해 온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평가결과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모두 9개 심사기준 중 5개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수탁기관이 운영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대응이 미흡해 보이고, 지문 등 간편 확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데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직접 갖추지도 않았는데 3개월 동안 갖추도록 하라고 조건부로 굳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심사조항 9개 중 5개가 사실상 불합격인데 이것을 해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지난 7개 카드사에 대해 본인확인 지정신청도 조건부 지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도 유사하게 간편인증 관련해서 자사가 보유하지 않는 부분이나 지금 NH농협카드가 가지고 있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 지적됐습니다. 저희가 3개월의 보완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때까지는 의결하되 교부증은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3개월 후에 확인한 이후 교부증을 발부하기 때문에 만약 이행이 안 됐다면 지정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다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의결하고 교부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7개 신용카드사도 이렇게 조건부로 다 나갔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데와 별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관련해서 심사기준은 9개 항목인데 세부기준은 75개입니다. 그래서 75개 중에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2개 분야는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 농협과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도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완료 안 되면 본인확인 할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세 번에 걸쳐 재검토를 계속했습니다. 심사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 보완과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 다시 협의해서 좀 더 농협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지정할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권장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장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국회나 이런 쪽에서 주로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있으니까 다른 대안도 국민들 편의 측면

에서 좀 더 확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면 좀 더 편리한 측면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권장해야 한다면 너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라도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좀 전에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대로 통신사와 카드사의 본인확인 이용비율이 95:5 정도 되는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 정도 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휴대폰으로 인증받은 건수가 10억건 정도 되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이는데, 카드사는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카드사들이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허 육 부위원장

- 카드사들이 본인확인 이용실적이 낮은데도 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실제로 자사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이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자사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사카드 보유회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자사카드 이용자들에게는 편리함이 있고, 이것이 수수료도 따로 있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있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본인확인 수수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있습니다. 보통 건당 20~30원 정도 본인확인기관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내는 것은 아니고 웹사이트나 앱 운영자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다른 웹사이트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할 때는 그런 정도의 수수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운영자가….

○ 허 육 부위원장

- 신용카드 회원이 610만여명, 체크카드 회원이 1,630만여명을 보유한 농협은행의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분야 5개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내년 3월까지 개선할 것을 약속했고, 또 이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보완 필요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하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중계운영사나 신용평가사 운영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대응 조치, 그리고 대체수단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사항, 또 긴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 대응한 백업 계획은 상당한 정도의 장비 투자, 아니면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비용 대비 기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자칫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후 관련된 진전사항에 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통 3사, 카드사 이 정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 확인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는 이용자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본인확인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진입장벽을 너무 낮추는 것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본인확인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보시고, 이 보완필요 사항을 다 충족하면 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통사나 카드사

까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민간기관이 본인확인기관으로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능력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또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요건을 갖춘 전문기술 인력 8인 이상이 기준이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농협카드 쪽에서는 기술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검토되지 않습니까?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도입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가칭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표 위원님께서 기재부 등 예산을 많이 협의해 주셔서 확보하였습니다. 의원입법 발의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전문 자격 제도가 이미 의원님 발의로 발의가 되어 있고, 저희 망법이 개정되면 말하자면 변호사처럼 국가기술전문자격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자격증 제도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수월치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협의해서 또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평가체계 시험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다루는 인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엄격하게 많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8-70-579~583)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의결주문입니다. ‘(주)카모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모람씨앤티, (주)씨아이피시스템을 개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 정보법”)」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허가신청을 공고했고 (주)카모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모람씨앤티, (주)씨아이피시스템, (주)지바이크 등 총 5개 법인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신청법인 주요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 별로 총 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19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청했고 접수를 위해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허가여부 통보기한을 2개월인 2019년 1월 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기준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 방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하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주)카모스, 아우디폭스 바겐코리아(주), (주)모람씨앤티, (주)씨아이피시스템 총 4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주)지바이크는 총점 70점 미만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허가신청법인별로 세부 심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 이후 심사 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요구한 위치정보처리 수탁자, 독일 본사입니다. 관리·감독 방안 등 보완 계획을 접수하였습니다.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은 위치정보시스템 관련 연1회 정기검사 및 국내 법령 교육, 수탁자인 독일본사의 매반기별 보고 의무, 국내 법령 위반할 경우 신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또 수탁자인 독일본사의 손해배상책임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 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허가 신청법인 중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같은 경우 규모도 독일본사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여기에 보면 허가신청 주체로서 적격은 다 후한 점수를 우리 위원들이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기검사, 예방조치 또 문제가 발생할 때 배상책임의 소재,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자료를 제출했다는데 보완자료가 다 충족된 것입니까? 보완자료가 독일본사로부터 온 것이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허가신청 주체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기 때문에 허가신청 주체로부터 받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우려가 다 충족된 것입니까? 그런 우려가 다 불식된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했고, 실제 코리아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신에 위치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독일본사에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수탁을 받은 기관이 위탁자에게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본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 안에 그러한 부분을 명시하도록 했고, 아직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지만 그 계약서에 대한 초본과 그다음에 본사의 확인서를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차량운행 정보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대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급상황이 생길 때 독일본사로 다시 조회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받고 다시 피드백을 받는 것이 과연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차피 우리 국내에서 폭스바겐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과연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한 심사 위원들의 지적은 없었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수집의 주체는 코리아 법인이었고, 수집된 위치정보를 바로 로밍을 통해 독일본사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본사에서 필요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구조 사항에 대해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시적으로 독일본사에 위치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로밍을 통해 차량에 달린 GPS를 통해 계속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점을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새벽에,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본사와 시차가 8시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신속하게 또 정말 적절한 시점에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코리아에 상당한 설비나 보완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꼼꼼하게 들여다보신 것이지요? 그런 데 대체 지적이 없었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심사위원들의 지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보다는 실제로 개인위치정보가 해외로 이전이 되어서 거기에서 저장되고 보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셨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계약서 안에 실제 수탁자인 독일본사가 위탁자인 코리아법인에게 주기적으로 매반기별로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하도록 명시했고, 만약에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가 됐을 경우에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 안에 명시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독일본사까지도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수탁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까지 명시하도록 했고, 그 부분은 확인하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버나 시스템 사항이 국내에 있으면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버를 국내에 두든 국외에 두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역점을 두고 아우디코리아의 경우 국회나 저희 위원회 방침이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방통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아우디 본사가 방통위에 위치정보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우디코리아가 신청해도 되는 것인가 관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한번 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우디코리아가 서비스 시행주체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 그다음에 거꾸로 수탁사인 본사에 아우디코리아가 위치정보 관련해서는 계약서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도 받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절차가 되면 해외사업자가 본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을 때 또는 허가를 받을 때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그러면 구글코리아나 종전에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위치정보 서비스사업을 한다고 했었던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탁자가 한국지사고, 수탁자가 본사가 된 케이스가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처음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종전과 달리 이번에 이렇게 처리 혹은 조치하게 된 계기나 과정이 있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본사가 서비스 주체인데 국내에 있는 자회사, 영업만 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인허가를 대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주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와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가급적 일치시키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허가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점검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번은 실제로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계약서상으로 요건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법적 조건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내에 존재합니까? 실질적으로 문서로 본사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한국 법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붙임 3> 5페이지를 보시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추가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들 의견서에 따르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청주체 적격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고 운영인력이 적절한지, 그리고 내부에 있어서 본사와의 유기적 관계, 우리 쪽 법령의 해석,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펼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소통하고 확보해서 이 운영사례가 잘 남는 것이 차후 다른 글로벌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 신청 혹은 확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 인원이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당부만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사업자들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신규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하시면서 ‘정기점검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글로벌사업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방통위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특히 글로벌사업자에 대한 것은 수시로 이행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18-70-584)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다> ”’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 주문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 6월 평가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11월 까지 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장 실사, 대리점·ARS 모니터링,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지난 8월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17년 7월~’18년 6월까지 업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대상사업자로는 이동전화 등 6개 분야 31개사로 하였고, 그중에서 맨 하단에 있는 앱마켓 4개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시범평가를 한데 이어 올해 최초로 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위원회는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 기관 등 민간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의 각 호에 따라 5개 분야 총 80개 항목에 대해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입니다. 평가 대상 31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80.5점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는 작년 평균인 910점에 비해 다소 하락했는데 이것은 올해 최초로 평가를 한 앱마켓 사업자 평가결과로 인해 전반적인 평균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별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평가입니다. 이용자보호 비전수립, 이용자의견의 서비스 반영, 업무 절차 및 직원교육, 수탁자 관리 및 교육,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전체사업자 평균은 86점이며, 인터넷전화가 가장 우수하고, 앱마켓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별 세부 평가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평가결과 알뜰통신사업자 중 이지모바일, 앱마켓 사업자 중 애플·구글이 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모바일의 경우에는 CS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글과 애플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이용자의 의견수렴·반영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입니다. 평가지표로는 가입 및 해지단계, 서비스 이용자단계 등에서 중요사항을 설명 고지했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불법정보 유통금지, 행정처분 실적 등을 평가하였고 이동통신과 알뜰통신에 대해서는 대리점 모니터링을 병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전체 사업자 평균은 90점이며, 인터넷전화가 가장 높고 알뜰통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도 역시 이지모바일, 구글, 애플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포털)의 경우 국외이전 개인정보 고지 및 동의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애플의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신고 시 처리, 또는 권리침해 정보유통방지 노력이 미흡하며, 그다음에 개인정보 침해방지 시스템 관리체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박스를 보시면 대리점 모니터링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동통신과 알뜰통신에 대해서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가장해서 미스터리 쇼퍼 형식의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대리점에서 약관 등 주요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지하는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제대로 교부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이동통신은 91.9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알뜰통신이 54.2점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는 8개사 중 3개사가 오프라인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리점의 안내문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입니다. 이 분야는 취약계층의 보호나 이용자 편의보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사업자 전체 평균은 87.4점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별로는 이동통신이 가장 높고, 앱마켓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구글, 애플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피해예방 노력이나 부정가입 및 명의도용 관련 점검 절차, 그다음에 구글의 경우 동영상 광고 요금발생 고지가 미흡하고, 이용자 불만 분석을 통한 사전적 이용자 보호활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마켓의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결제에 본인 확인 절차 등이 미흡하고 그리고 이용자 불만 분석을 통한 사전적 이용자 보호활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 요금발생 고지가 미흡하였고, 상품 출시 사전점검 운영 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용자들 불만처리나 피해구제 등을 평가하였고, 이용자 설문조사 및 ARS 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자 평균은 85.7점이며, 인터넷전화가 가장 높고, 앱마켓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경우 평가점수가 53.1점으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자 불만처리 관련 자료 제출을 미흡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3,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약관의 주요 설명서 작성 및 안내, 피해예방 정보제공, 고객센터 만족도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평균점수는 82.8점이며 사업자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상담 전화 평가결과입니다. ARS의 상담사 연결 시 평균 소요시간, 지연 시 대기인원 등 연결 불가시 콜백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자 전체적으로는 92.9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포털 중 카카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권리 보장이나 이용자 선택권 보장, 유료서비스 결제편의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우수사례나 자율규제한 사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앱마켓 전체 4개 사업자가 앱 검색 시 서비스 기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애플의 경우에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제한하여 결제방법의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사업자별 우수사례 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면 이동통신 4개사가 콜센터 상담사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서 업무효율을 증진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알뜰통신 중 SK텔링크가 치매노인찾기 등을 위해 휴대폰 위치정보를 문자로 발송해 주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했다는 것 외에 업체별로 우수사례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매우우수 사업자는 4개사 중복을 제외할 경우 5개사입니다. 그리고 우수사업자 11개사, 양호사업자 6개사, 미흡한 사업자가 5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SKT가 우수, 인터넷전화는 LGU+, SKB, KT 순이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 SKB, SKT, KT, LGU+ 순이고, 알뜰통신은 SK텔링크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사업자로는 알뜰통신 2개사,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이고 그다음에 포털의 구글, 앱마켓의 구글과 애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플은 1,000점 만점에 532점으로 가장 최하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득점사업자인 SKB가 1,000점 만점 중 970점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위원장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세부 평가결과는 업체에 자세히 통보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30% 이내, 우수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감경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평가위원 의견입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과 관련해서 전체 공통사항으로 장애인·노령층·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비스별 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가업무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평가를 '포털' 분야로 한정하는 것보다 전체 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업자 평가의 경우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에 대해 대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애플의 경우 당초 정해진 자료제출 기한 내 자료를 매우 부실하게 제출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 예고 등 독촉 공문을 발송한 후 재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평가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3년 연속 전체 사업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년도 평가를 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업체별로 사업자별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방통위가 고민해야 할 논점과 과제들을 제기해 주고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본 평가대상이 된 앱마켓 사업자 평가 결과가 낮아서 작년보다 전체 평균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평가 계획 보고 때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 평가를 계기로 고객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리뷰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고, 포털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무료서비스사업자이기 때문에 평가의 필요성이나 평가 자체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5개 분야 평가결과 평균을 보면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털이나 앱마켓 이용자 증가에 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이 이번 평가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특히 해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이번 평가를 통해 밝혀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애플에 대해 현장실사 나갈 때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고 하는데 업무담당자가 아니라 변호사가 나와서 대응을 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대부분 변호사들이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변호사들이 주로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처음에 자료 제출은 불성실하게 했습니다만 현장조사를 갔을 때는 아시아 쪽 담당자와 애플 부사장이 와서 현장조사에도 임했습니다. 관련 자료제출들은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추후에는 다시 자료 제출이 됐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두 번째 받은 자료도 그중 일부 기업 대외비다,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미제출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이번 평가계획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자료제출도 부실했고 그 결과 평가점수도 미흡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국내시장 상황을 보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 평가 계획을 마련할 때는 구글이나 애플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가 단순한 소통창구가 아니라 특정한 다수를 향한 커머스 채널로 진화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용자보호의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금 부위원장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구글, 애플 글로벌사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항상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현장조사에도 충분히 협조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별도로 TF라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분을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했는데 보통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우수, 그다음에 우수, 보통 그러면 될 텐데 양호, 보통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통에는 한 사업자도 들어가지 않는 이 구분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상세하게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이것이 벌칙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이용자 보호업무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구글, 애플 등 글로벌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평가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거나 실행 가능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년 내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글로벌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대해서도 글로벌인터넷사업자가 규제기관 그리고 국내 이용자들을 무시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가에서 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부각시켜야겠지만 구글, 애플처럼 사회적 책무, 이용자 보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글로벌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글로벌인터넷사업자들이지요. 이용자들에 대해 보호업무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백서를 내서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자 보호업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보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기업들의 행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도자료를 낼 때 분명히 강조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 평가방법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가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실행 가능한 규제방법을 꼭 찾아주십시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글로벌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해 좀 더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자율규제의 한 일환입니다. 사전·사후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측면보다는 사전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다른 모범사례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사업자가 국내사업자보다 상당히 미흡하지만 저희 이런 평가를 통해, 저희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 국내에 콜센터를 세계 최초로 설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업자도 방통위의 이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평가가 한 해 한 해 쌓이다 보면 사업자도 좀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자율규제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국 내에서는 기업 스스로 백서를 발간합니다. MS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디지털 신뢰보고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이 밖에도 몇 가지 백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표합니다. 정말 글로벌사업자에 준하는 책무를 다 한다면 규제당국의 평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가별로 백서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하려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백서를 내라고 해야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런 백서를 발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방통위가 하는 평가에 협조하지 않고 자체적인 백서도 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잘하면 왜 정부가 불이익을 줄 방법,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앱마켓에 대한 본평가를 해 본 것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예상대로 정말 구글이나 애플은 아주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 평가가 이어질 텐데 또 같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료제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료 미제출, 그다음에 각 항목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이나 법규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불만처리 실적, 전부 다 자료 미제출입니다. 특히 불법유해정보 신고처리, 정보유통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위원들의 지적도 눈에 락입니다. 요금발생 고지 미흡, 모두가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저조한 점수를 받고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이 조사는

하나마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평가위원들이 앱마켓에서 보면 이용자 안전 및 공익에 반하는 정보유통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고삼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 이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잘된 모범사례는 공유해서 소비자 인식도 좋아지는 여러 가지 당근을 우리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과징금을 30%, 20% 감경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주는데 구글이나 애플은 관심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된 사례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조한 것을 알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이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소비자, 이용자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부실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자기들도 한국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업무를 강화해야겠다, 그런 자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조한 점수도 구글, 애플은 공개하시지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률자문관님, 혹시 국제상거래법상 저촉되는 범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 곽영환 법률자문관

-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이번 기회에 글로벌사업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구글, 애플을 다 이용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낮은 인식으로 우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기업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이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비자, 이용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 이든 특단의 조치가 여러 가지 충돌을 빚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기본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고 의결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평가항목들에 대한 잘잘못 우수사례, 미흡사례 등을 공개하는 여부를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이 주신 것을 좀 더 반영하는 측면에서 사업자별 평가결과는 피드백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평가했을 때 어느 것이 우수하고 어느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털과 앱마켓의 경우에는 평가기간이 포털은 두 번째 본평가, 앱마켓의 첫 번째 본평가여서 좀 더 개선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수사례를 사업자들 간 워크숍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을 처음에 할 때 공개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등급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가 구체적인 점수나 항목은….

○ 이효성 위원장

- 여기에 있는 점수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 뒤에 기자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전체 총점은 공개….

○ 이효성 위원장

- 결과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도자료로는 등급별로 950점 이상 또는 미흡은 800점 미만 그렇게 해서 세부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등급이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어쨌거나 이런 것이 기왕에 상당한 정성을 들여서 한 것이고 이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각 회사에게 알려서 스스로 이 결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개가 되어서, 특히 언론에 많이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사업자들이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부끄럽거나 자기들의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수를 아예 공개할 수 있게 등급을 구간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것을 미리 사업자에게도 공개 여부를 확약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언론들이 보도해 주어야 효과가 있지,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별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번에도 가급적이면 대변인께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해 보시지요.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구간 등급제로 나눈 것은 그동안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높은 쪽에서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아서 등급제 구간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은 분야는 보다 더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해서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했는데 5등급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부 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쪽을 칭찬해 주지만 못하고 있는 쪽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미흡 부분을 오히려 2단계로 더해서 아주미흡까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보통은 해당자가 없으니까 아예 미흡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매우미흡' 구간을 신설 하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5분 폐회 】